

# 199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

의안 번호	2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'98. 10. 30
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'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8월중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국도비보조 확정내시액 및 지방교부세등 정부지원금의 변동분을 반영하고, 자체 필수경비 및 조직개편관련 부서간 경비조정을 위하여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'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3,26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,21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,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5,011백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3,17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8,253백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3백만원이 증가하였음.

### 나. 세입예산은

일반회계가 지방세 700백만원, 세외수입 ▲1,683백만원, 지방교부세 708백만원, 지방양여금 667백만원, 국도비보조금 12,779백만원이 증감하였으며,

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로서 세외수입 43백만원이 증가하였음.

### 다. 세출예산은

일반회계가 경상예산 399백만원, 사업예산 13,048백만원, 예비비등 ▲ 276백만원이 증감되었으며,

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로서 경상예산 12백만원, 사업예산 24백만원, 채무상환 7백만원이 증가하였음.

라.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해복구등 불가피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가용자원부족분 717백만원을 지방재정법제35조 1항에 따라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고자 함

# 관계법령발췌서

## □ 지방자치법 제121조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 □ 지방재정법 제36조

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
다만, 국가나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동일회 계년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## □ 지방재정법 제35조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1.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
2. 세출예산·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안의 것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년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

③ 제1항의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.